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 376회 임시회  
2019.10.18.(금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#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19년 10월 08일
- 회부일자: 2019년 10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출연목적

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하였으며(17.2.17),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교육, 여성·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
○ 출연 예정금액: 1,204,948천원 (도비100%)

- 출 연 근 거: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8조
- 재단운영비: 1,204,948천원(인건비 및 경상비, 사업비)

○ 출연계획 (단년 · 반복사업)

(단위 : 천원)

구 분 (기준보조율)	2018년 (A)	2019년 (B)	2020년 (C)	증감 (D=C-B)
도비(100%)	1,117,206	1,204,948	1,204,948	0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법적근거

- 본 출연계획안은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였음
-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충북여성재단의 재산 및 운영경비에 대해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출연계획안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의 제출되었음.

### ○ 종합의견

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, 충북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7년 2월에 설립된 재단으로
-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·가족정책 연구 기능 강화 및 안정적인 교육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성평등 교육 연구 거점기관으로서 존립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- 다만,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하나 순세계 잉여금 등의 증가로 재단의 전체 예산은 증액(104백만원)되었음. 향후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과 내실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- 아울러, 자체수익사업 운용 등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## 참고 1

## 충북여성재단 예산현황

### □ 충북여성재단 연도별 예산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18				2019			
	계	출연금	수탁사업	기타	계	출연금	수탁사업	기타
합계	1,938	1,117	601	220	2,034	<b>1,205</b>	745	84
국비	328		328		403		403	
도비	1,390	1,117	273		1,547	<b>1,205</b>	342	
기타	220			220	84			84

※ 당초예산 기준 작성

### □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내역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금액	산출내역	비고
합계	1,393		
운영재원	1,372		
인건비	621	- 사무처 직원 10명 (기본급 및 수당, 퇴직급여)	
경비	243	- 복리후생비, 일반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일반보상금, 집기구입 등	
사업비	508	- 교육운영, 정책연구,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등	
예비비	21		

## □ 지방재정법

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□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용 지원 조례안

**제3조(재산 및 운영경비)**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출연금
2. 개인·기관·단체 등의 출연금
3. 제9조에 따른 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**제4조(재단의 사업)**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여성·가족·다문화·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·개발 사업
2.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3.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
4.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
5. 여성인권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업
6.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
7.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·협력 사업
8. 여성·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
9.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8조(재정지원 등)**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